

[www. 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

개성공단 Q & A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www. 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

개성공단

Q & A



개성공단사업은 남과 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의 경협사업』인 동시에 평화와 통일의 기초를 다지는 사업입니다.

● 남과 북 모두에 도움되는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경협사업

개성공단 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하여 남북이 모두 이익을 얻고자 추진된 “경제협력” 사업입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는 고비용·저효율 구조 및 노동력 부족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으며, 북한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표적인 남북 협력 프로젝트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경의선 도로를 통해 매일 수백명의 인원과 차량이 남한과 개성을 오가며 공단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간의 신뢰가 구축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기초가 다져지게 됩니다.



개성공단의 발자취

2000. 8.22 현대-北측간 개발합의서 체결
 2002.11.27 北, 개성공업지구법 발표
 2002.12. 1 北, 개성공업지구 토지이용증(50년) 발급

2003. 6.30 개성공단 1단계 개발 착공식 거행
 2004. 4.13 토지임대차 계약 체결
 (토공, 현대↔北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2004. 4.23 통일부, 1단계 3.3km² 협력사업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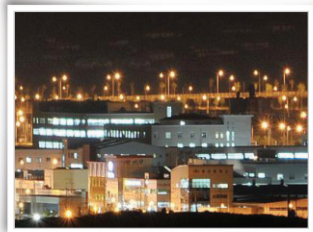
2004. 6.14 시범단지 15개 기업 입주계약 체결
 2004. 6.30 시범단지 부지 조성공사 완료
 2004. 6.30 통일부 개성공단 사업지원단 출범
 2004.10.20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소

2004.12.15 개성공단 최초의 생산품 출시

2005. 9.21 1단계 본단지 1차 24개 입주기업 선정
 2005.12.28 시범단지 통신 303회선 공급
 2006. 6.29 1단계 3.3km² 부지조성공사 완료

2007. 6.25 1단계 본단지 2차 183개 입주기업 선정
 2007.12.11 문산역-판문역간 화물열차 정기운행
 개시

2008.9월말 현재 83개 기업 가동, 누적생산액 4억3천만달러, 북측근로자 3만3천여명이 근무하는 공단으로 발전



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개성공단 (2008. 9월 현재)

🔆 각종 시설



변전소



폐수종말처리장



기술교육센터



소방서



정·배수장



협력병원

🔆 개성공단 전경



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개성공단 (2008. 9월 현재)

북측근로자의 모습



생산활동



생산활동



업간체조



출·퇴근



휴식



휴식

개성공단 야경



1	투자 환경	7
	1장 기업 여건	8
	2장 기반 시설	12
	3장 각종 지원제도	14
2	투자 절차	17
	〈개성공단 투자 흐름도〉	18
	1장 분양	19
	2장 협력사업 승인	21
	3장 대북투자 신고	23
	4장 기업창설 · 등록	24
	5장 공장 건축	26
3	출입절차 및 판로확보	29
	1장 인원 및 자동차 출입	30
	2장 물품 반출 · 반입절차	33
	3장 전략물자 관리제도	36
	4장 원산지 표시제도	38
4	현지 기업활동	41
	1장 세금 및 보험제도	42
	2장 외환 · 금융 · 회계제도	46
	3장 노무 · 안전 · 환경관리	49
	4장 부동산제도	54
	부록	57
	〈부록1〉 개성공단 사업체계	58
	〈부록2〉 개성공단 관련법규	59
	〈부록3〉 개성공단 관련기관	60



1편 투자환경

|1장| 기업 여건

|2장| 기반 시설

|3장| 각종 지원제도



〈개성남대문〉

개성남대문은 개성 내성의 정남문으로 고려말부터 조선초에 걸쳐 완성되었으나, 6·25때 파괴된 것을 1954년에 복원하였다. 남대문은 고려시대의 건축술을 이어받아 장식이 소박하면서도 짜임새가 있는 문루로 평가되며 남대문안에는 연복사에서 옮겨온 무게 14톤의 거대한 연복사종이 걸려 있다.



1장 기업여건

개성공단은 우수한 입지, 경쟁력 있는 노동력, 세제 혜택 등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지여건

◆ 서울(금융)-인천(물류)-개성(제조)을 잇는 서해 삼각경제권역



◆ 우수한 수도권 접근성(서울 60km, 인천 50km)

⇒ 물류비 절감 및 거대 소비처인 수도권을 배후지로 활용

◆ 대륙 및 해양 진출 용이

⇒ 향후 중국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계를 통한 동북아 경제협력의 거점 역할

◆ 남북직접교역의 중계기지 역할



⇒ 남북당국간 합의에 따라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설치('05.10)

운영여건

◆ 경쟁력 있는 노동력 확보

- 저렴한 인건비 ⇒ 최저임금 月 55.125US\$
- 근로자들의 교육수준이 양호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이점

◆ 매력적인 세제 혜택

법인세의 경우 10~14%(국내 13~25%, 중국 15%, 베트남 10~15%)이며, 다양한 감면 혜택

Q&A 1-1 현재까지의 개성공단 개발 추진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 개성공단은 개성직할시와 판문점 평화리 일대(평양에서 약 160km, 서울에서 약 60km)에 1단계 총 3.3km²(100만평) 규모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 부지조성('06.6), 도로 및 상하수도 건설('07.6), 용수·폐수·폐기물매립장 건설('07.10) 등 기반시설은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소각장, 소방시설, 의료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 향후 2단계 등 개성공단 확대 개발 문제는 북한 핵문제의 진전 및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 개성공단 1단계 개발사업은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의 입주유치를 위해 총 100만 평 규모로 Fast-Track 방식(기간 단축을 위해 설계·시공 병행)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공장용지는 시범단지를 분양한 후 본단지는 두 차례에 걸쳐 단계별 분양하여 241개사가 입주업체로 선정되었으며, '08년 9월 현재 83개사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 고용상황을 보면 '08.9월 현재 북측 근로자가 약 3만3천 명 정도이며, 남측근로자는 약 1천2백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 1단계 입주가 완료될 경우 총 450여개의 기업(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 포함)에 북측 근로자는 약 9만8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08.8월 현재 생산·수출 현황을 보면

- 금년 8월까지 연간생산액은 16,236만불, 누적생산액은 43,578만불에 이르고 있으며,
- 총 수출액은 8,651만불로 생산액의 20%이며, 주로 중국·유럽·중동·러시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생산 및 수출현황〉

(단위 : 만불)

구 분	2005	2006	2007	2008.8	계
생산액	1,491	7,373	18,478	16,236	43,578
수출액	86.6	1,983	3,967	2,615	8,651

* '08.8월 현재 누적생산액(43,578) 중 업종별 생산액 구성비율은 섬유 57%, 화학 6.3%, 금속·기계 13.5%, 전기·전자 21.1%, 식품(1.3%)임.

Q&A 1-2 개성공단이 국내·외 공단에 비해 유리한 투자여건은?

개성공단은 북한의 나선 경제지대, 중국 또는 베트남의 경제특구 등과 비교하더라도 유리한 투자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 ▶ **지리적 근접성에 따른 인적·물적 이동의 편리성**
 - 서울, 인천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인원과 물자의 신속한 이동 가능
 - 다만 현재 불편한 통행·통관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
- ▶ **남한기업인, 해외동포 및 외국인이 단독 또는 공동투자가 가능하고 기업설립 등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개성·중국·한국공단 비교〉

구 분	단위	개성(A)	중국(B)	한국(C)	중국대비(A/B)	한국대비(A/C)
월최저임금	달러	55,125	100~200	788	0.29~0.58	0.12
주당법정근무시간	시간	48	44	40	1.1	1.2
기업소득세	%	10~14	15	13~25	-	-
평당분양가	원	149,000	120,000	407,500	1.2	0.37

* 분양가는 중국은 심양지역 기준이고, 한국은 국가산업단지(195,000~620,000)의 중간 값

Q&A 1-3 개성공단에는 어떤 편의시설이 있나요?

- ▶ 개성공단에는 남측 근로자 및 기업활동 편의를 위해 각종 편의(상업)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성공단 편의시설 운영 현황('08.8.22현재) 〉

()준비중

업종	구내 식당	일식당	중식당	편의점	기념품 판매점	당구장	호프	노래방	발마사지	호텔	은행 (우리은행)
업장수	3(1)	1	1	3	1	1	1	1	1	1(1)	1
업종	위성방송 서비스	주유소	차량 정비소	창고 보관업	상가 분양·임대	사무 편의점	공구·자재 도소매	부식·자재 도소매	설비·자재 도소매	통신장비 보수·유지	-
업장수	1	1(1)	1	1	(1)	(1)	1	1	1	1	-

* 통일부로부터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아야 편의시설을 운영(영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 관련문의 :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운영지원팀(T : 02-3783-7434 · 7437)

Q&A 1-4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은 무엇이 있는지요?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다른 남북경협사업에 비하여 명확한 법적·제도적 장치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 ▶ 북한은 개성공단에만 적용되는 「개성공업지구법」 및 16개 하위규정 등을 제정·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각 규정을 구체화한 세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 <16개하위규정>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기업창설·운영규정, 세금규정, 노동규정,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출입·체류·거주규정, 세관규정, 외환관리규정, 광고규정, 부동산규정, 보험규정,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회계검증규정, 자동차관리규정, 환경보호규정 등
- ▶ 한편, 우리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07.5)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07.9)·시행하고 있으며, 기업활동의 기준이 되는 사업준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 <42개사업준칙>기업창설운영준칙, 부동산등록준칙, 가스안전관리준칙, 노동안전준칙, 건축준칙, 소방준칙, 대기환경관리준칙, 외환관리준칙, 자동차등록준칙, 석유판매업준칙, 기업 회계기준, 회계검증준칙, 출입증발급준칙 등
- ▶ 그 밖에 남북당국간에 합의한 개성공단 관련 합의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4개합의서>개성공업지구 통선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2장 기반시설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교통, 통신, 전력 등 각종 기반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도로 · 철도

노선	노선수	연결구간	현황
철도	단선	남측 : 문산~군사분계선(12km) 북측 : 군사분계선~개성(15.3km)	공사완료('02. 12. 31) 남북궤도 연결('03. 6. 14)
도로	4차선	남측 : 통일대교~군사분계선(5.1km) 북측 : 군사분계선~개성공업지구(5km)	공사완료('03. 10. 31) 공사완료('04. 11. 30)

에너지 · 통신

◆ 전력 (한국전력)

구분	공급 전력량	공급시기	공급 방식
시범단지	15,000KW	2005. 3. 16	배전방식 : 22,900V
1단계	100,000KW	2007. 6	송전방식 : 154,000V

* 2007.6.21 평화변전소 준공(요금은 국내수준 적용)

◆ 통신 (KT) : 현재 700회선 규모의 전화, FAX서비스 제공중

- KT문산전화국~개성(전화국)~개성공업지구(입주업체)를 광케이블로 연결
- 향후 1만회선 규모의 통신센터건설 계획

용수, 오 · 폐수 및 폐기물 처리

◆ 용수



■ 정배수장

수원지	공급 용수량	공급시기
월고저수지	6만톤/일	2007.10

◆ 오 · 폐수



■ 폐수종말처리장

처리능력	처리방식	처리시기
3만톤/일	고도처리(질소·인 유기물질 등 제거)	2007.6

◆ 폐기물 : 공업지구 내 처리시설 및 매립장 건립

처리능력	처리방식	처리시기
소각	12톤/일	2008. 6
매립	매립용량 : 204천m³	2007. 6

기타 기반시설 관련 문의사항은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건설지원팀(☎ 02-3783-7451~5)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A

**2-1 남한에서 개성공단으로 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또, 개성공단내에서 이동전화 및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가요?**

- ▶ 남측←개성공단간 통화는 국제전화방식으로 001-8585-XXXX(해당번호)순으로 다이얼을 누르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통화요금은 국제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북측통신망을 이용하던 '05.12월까지는 1분당 2.3\$이었으나, KT가 통신제공을 시작한 2006년 이후 1분당 0.4\$로 기존의 1/6 수준으로 인하되었습니다.

〈 개성공단 vs 주요국가 통신요금 비교 〉

구 분	개성공단	미 국	중 국	일 본
국제전화요금(원/1분)	400	288	996	690

- ▶ 개성공단내에서는 이동전화 및 인터넷 이용이 아직도 불가능합니다.
 - 정부로서는 당국간 대화가 재개될 경우, 실무협의를 통해 인터넷 및 이동전화 이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Q&A

2-2 개성공단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무엇이 있는지요?

- 현재 개성공단에서 사용가능한 에너지는 전기, 경유 및 LPG가스가 있습니다. 전기는 한국전력에서 10만kW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경유는 현대오일뱅크, LPG는 E1과 SN에너지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 개성공단은 에너지 수요량, 이동방식 등을 고려하여 초기부터 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하고 또한, 산업용 스팀·열·온수 등을 공급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2009년 초부터는 공급이 가능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3장 각종지원제도

안정적 투자활동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 협력자금 등을 통한 각종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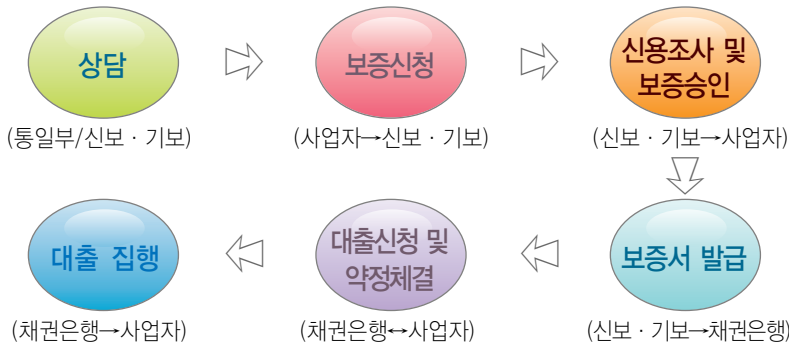
개성공업지구 지원법(제정2007.5.25)

- ◆ **국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지원제도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동일하게 적용**
 - 중소기업구조고도화, 에너지합리화, 산업안전, 환경오염 등의 각종 자금을 지원 또는 용자
- ◆ **국내 공단에 준하는 정부 지원**
 - 기반시설 지원 등 국내 산업단지에 준하는 정부지원 보장
- ◆ **개성공업지구 남측 근로자 보호**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고용된 우리 근로자에게 국내 근로자보호법규 및 4대 보험 적용
 - * 건강보험료의 경우 남측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08.8월부터 50% 경감제도 시행

보증지원제도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보증지원

- ◆ **보증대상** :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국내 모기업
- ◆ **보증비율** : 부분보증(시설자금 90%, 운전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비율 적용)으로 운용
- ◆ **보증한도** : 기업당 100억원(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70억원)
 - 기업당 전체 보증한도는 모기업의 신용보증잔액을 포함하여, 투자자금의 70% 범위내에서 보증서 발급
- ◆ **보증료** : 보증료 운영기준에 따라 년 0.5 ~ 3% 수준
- ◆ **보증기간** : 시설 자금 7년, 운전자금 5년 이내
- ◆ **지원절차**



▷ 신·기보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일반기업에 대한 보증은 신보가 담당하고, 기보는 벤처기업·이노비즈 기업 등을 전담

남북교역 · 경험보험

비상상황 등의 사유로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액의 90%까지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 ◆ **담보하는 위험** : 북한의 투자재산 몰수 · 박탈 · 전쟁 · 내란 등
- ◆ **약정금액** : 원칙적으로 약정가액(계약 · 투자금액) × 90%
- ◆ **약정한도** : 기업당 50억원(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100억원까지 가능)
- ◆ **약정절차** :



투자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국내기업이 개성현지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 공제 허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국내기업이 개성공업지구에 임가공을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허용('08.1.1 이후 투자부터 적용)

* 상세내용은 44page 참조

그 밖의 지원제도

◆ 개성공단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자체브랜드가 없거나 브랜드를 육성하기 어려운 입주기업을 위해 공동 브랜드 개발 지원 예정

◆ 법률지원제도

남북관계 전문 변호사, 교수로 구성된 「남북경협법률상담지원단」을 운영하여 기업설립 · 부동산 · 세금 등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상담 및 법적 애로 해결

※ 신청 :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각종 지원제도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투자지원팀(☎ 02-3783-7444)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A 3-1 개성공단 진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 개성진출기업에게도 국내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개성공단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을 별도로 배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 9조).
- 정책자금은 지원사업, 대상 등에 따라 중소벤처창업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경영혁신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구조조정자금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현재까지 개성공단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간협력자금(구, 협동화)이 429억원 승인되었습니다.

〈 '08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 및 용자 조건 〉

자 금 명	'08예산	지원한도(시설/운전)	대출기간(거치)(시설/운전)	금리*(3/4분기)	
중소벤처창업	6,400	연간 20억/연간 5억	8년이내(3)/5년이내(2)	4.79%	
개발기술사업화	1,200	연간 10억/연간 3억	8년이내(3)/5년이내(2)	"	
경영 혁신 자금	시설개선	7,904	연간 30억/연간 5억	8년이내(3)/3년이내(1)	"
	지식기반서비스육성	1,000	연간 10억/연간 5억	8년이내(3)/3년이내(1)	"
	기업간협력	2,527	연간 40억/연간 5억	10년이내(5)/5년이내(2)	"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원부자재	1,750	연간 5억	3년이내(1)	"
	재해복구	500	연간 10억	3년이내(1)	4.09%
	수출금융	663	10억	180일이내	4.79%
구조 조정 자금	희생특례	200	연간 10억	3년이내(1)	7.49%
	사업전환	1,100	연간 30억/연간 5억	8년이내(3)/5년이내(2)	4.79%
	무역조정	300	연간 30억/연간 5억	8년이내(3)/5년이내(2)	"
합 계	23,544				

◆ 신청·접수기관

- 개성공단 진출 중소기업은 모기업이 소재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콜센터(국번없이 1357), 각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Q&A 3-2 신용보증지원 규모는 투자예정금액의 70%까지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 신용보증지원은 초기 시설자금의 경우, 국내보증을 포함하여 총 100억원까지 가능하며, 투자예정금액의 70% 범위내에서, 당해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총매출액 규모, 사업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증지원 규모를 결정하게 되므로 업체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편 투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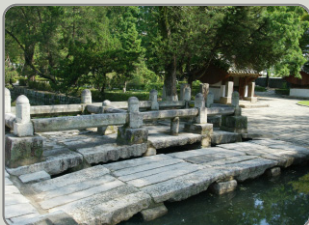
|1장| 분양

|2장| 협력사업 승인

|3장| 대북투자 신고

|4장| 기업창설·등록

|5장| 공장 건축



〈선죽교〉

선죽교는 자그마한 돌다리로 고려 충신 정몽주가 이방원에 의해 피습당한 곳인데 애초에 선지교(善地橋)라 불리던 것을 정몽주가 흘린 핏자국이 없어지지 않고 참대가 자라났다고 하여 선죽교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다.

개성공단 투자 흐름도





1장 분양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분양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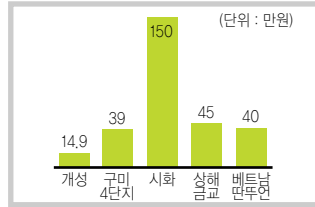


◆ **분양단가** : 45,000원/㎡(평당 149,000원)

◆ **분양대상** : 2054, 4, 12까지의 토지사용권

* 신청자격, 방법 및 대상자 결정방법은 분양공고문 참조(한국토지공사 ☎ 031-738-7419, 7966)

※ 개성공단 토지이용권과 분양가 비교표



분양현황

◆ 1단계 업종배치도



유치업종	면적(천㎡)	비율(%)
섬유·봉제·의복	558	25.7
가죽·가방·신발	214	9.9
복합업종	416	19.2
음식료·기타제조업	415	19.1
전기·전자	159	7.3
기계·금속	318	14.6
화학·고무·플라스틱	91	4.2
합계	2,171	100

◆ 생산시설 분양현황

구분	면적	업체수	경쟁률
시범단지(04.6)	9만㎡	15	9:1
본단지1차(05.9)	17만㎡	24	5:1
본단지2차(07.6~8)	175만㎡	182	2.3:1
합계	201만㎡	221	

Q&A

1-1 국내에서 소규모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통해 개성공단에 진출할 수 있는지요?

- 개성공단에는 소규모 영세기업들의 투자진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 아파트형 공장은 공공기관의 임대방식과 민간기업의 분양방식이 있으며, 현재는 한국산업 단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형의 아파트형 공장이 가동중입니다.
- 이외에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민간기업 등이 건설예정인 7개의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 현황 〉

회사명	방 식	추진일정	부지면적 건축면적(평)
산업단지공단	임대형	'07.8 입주완료	4,000 2,300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임대형	'08.12 완공예정	6,934 2,132
비케이전자	분양형	미 정	7,174 2,896
낙원건설	분양형	'09.12 완공예정	9,533 5,479
건우피엠	분양형	미 정	6,665 3,672
씨엘전자	분양형	'10.4 완공예정	6,090 2,328
태림종합건설	분양형	미 정	4,784 2,458
산업단지공단	임대형	미 정	5,900

* 민간기업의 일정 및 계획은 업체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Q&A

1-2 개성공단 협동화단지란 무엇이며, 희망하는 경우 분양절차 및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 개성공단에는 중소기업의 협력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협동화 단지가 있습니다. 협동화사업은 동종 또는 관련업종 3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여 시설공동이용 등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도모 하는 사업입니다.

◆ 분양절차

- 분양공고에 의거 토지공사에 분양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심사 및 승인(남북협력지원실/지역본부)
-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을 승인받은 업체에 한해 토지공사와 분양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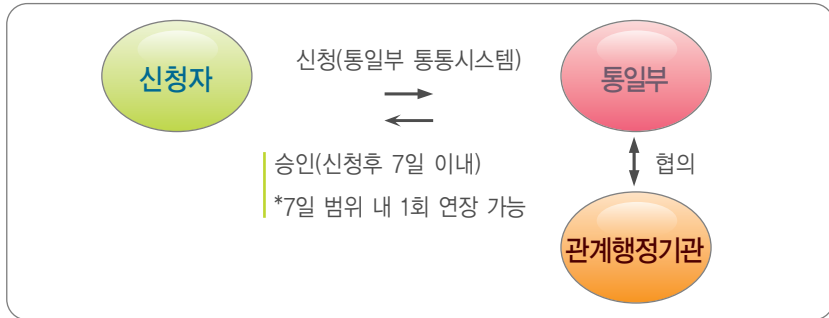


2장 협력사업승인

분양계약 체결 후 통일부로부터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으면 개성공단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완비됩니다.

협력사업(자) 승인 절차

▶ 협력사업(자) 승인은 사업계획서, 분양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통일부 통통시스템 (<http://www.tongtong.go.kr>)을 통해 신청



▶ 신청방법 : 통일부 통통시스템 접속 > 협력사업 > 경제협력사업 > 승인신청

-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가 투자금액 변경, 업종 추가 등 협력사업 변경시에도 통일부 통통시스템을 통해 신청⇒신청 후 7일 이내에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승인여부 결정(7일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전략물자판정서 1부, 분양계약서(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분양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회사소개서(사업실적 증빙서류,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포함), 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 사업계획서에는 투자계획, 자금조달 운용계획, 생산·판매계획, 조직·인력계획, 반출물자, 추진일정 등을 포함

TIP

협력사업(자) 승인이란?

- 협력사업자 승인 : 남북간에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
- 협력사업 승인 :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자가 북측 당사자와 구체적으로 합의한 추진 예정 사업에 대한 승인절차로 승인 받은 내용에 따라 본격적인 대북투자를 실행할 수 있음

* 협력사업자와 협력사업 승인을 동시에 진행 시킬 수 있음

협력사업승인 관련 문의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 APT형 입주기업 관련 : " "
 편의(상업)시설 관련 : "

지원총괄팀(☎02-3783-7414)으로 문의
 투자지원팀(☎02-3783-7443)
 운영지원팀(☎02-3783-7434)

Q&A

최초 협력사업시 승인 투자금액으로 5억을 신고했습니다. 추가 기계설비 등으로 투자금액이 2억원 증가하였는데 협력사업변경승인이 필요한가요?

- 투자금액증가, 업종변경 등 협력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에 따라서 사전에 협력사업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변경신청은 통일부 통통시스템을 통하여 하면 되고 7일내에 승인여부를 결정 합니다.
- 변경승인이 나면 투자금액 변경의 경우는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에 따라 지정 외국환 은행에 투자내용 변경 신고를, 업종변경은 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 TIP 북한에는 어떤술이 있나?

북한에는 민속술이 많다. 평양백로주는 소주 종류인데, 도수가 매우 높다. 남한에서도 조선식료 무역회사가 만든 평양소주가 대량 수입되어 백화점에서 인기리에 팔린 적이 있다.

맥주에는 룡성맥주와 금강맥주, 봉화맥주, 대동강맥주 등이 있다. 룡성맥주는 색깔이 진하고 맛이 달짝지근한 편이다. 630mm들이 병맥주가 인기가 있고, 금강맥주는 350mm들이 캔으로도 판다. 북한사람들은 맥주와 술을 따로 구분할 정도로 도수가 높은 술을 즐긴다. 남한의 백화점 등지에서 볼 수 있는 북한의 오가피술이나 강계포도술 등은 40도 남짓 되는데 북한의 술 중에는 60도가 넘는 것도 있다.

개성인삼술이나 백두산 들쭉술도 널리 알려진 술이다. 그 중에서도 백두산 밀림 일대에서 많이 나는 들쭉으로 빚은 들쭉술은 손님맞이 술로 인기가 높다. 들쭉은 북한 지역에서 주로 나는 빨간 열매인데 특히 백두산이 있는 양강도의 특산품이다. 들쭉술은 15도, 25도, 40도짜리의 세 종류가 있다. 외국인들은 대개 15도짜리를 즐겨 마시는데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의 부인이 이 들쭉술을 맛보고 '포도주보다 훨씬 좋다'고 감탄하자 김일성이 12상자를 선물했다는 일화도 있다.



3장 대북투자신고

투자 자금 송금에 앞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에 따라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외국환거래 취급 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방법

개성 현지에 현금을 송금할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후 송금하며, 현물로 출자할 경우 신고한 내용에 따라 물자반출 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제출 서류

- 대북투자신고서, 협력사업 승인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기타 이행사항

신고한 이후에도 투자 자금 송금 등 투자 이행시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아래 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해야 함

사유	조치사항
투자신고 내용 변경	통일부장관의 변경승인서 사본 첨부하여 신고
투자금의 송금	투자금의 송금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야 하며, 송금 전에 투자신고한 내용대로 송금하는 것임을 확인 받음
현물 출자	출자할 물자를 반출한 후 즉시 보고
증권 등 취득·변동	북한 현지법인의 증권이나 지분을 취득한 후 1개월 이내 취득·변동 보고서 제출
대부계약 체결	북한 현지법인과 대부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대부계약 체결 보고서 제출
대부원리금 회수	회수 즉시 보고서 제출
현지금융의 조달	북한 현지법인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인증을 받아야 함
매 회계기간 종료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제출
이익의 재투자	투자의 이익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인증을 받아야 함
청산	청산 전 미리 신고하고, 청산 후 2개월 이내 청산보고서 제출

※ 상기 조치에 필요한 서식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서 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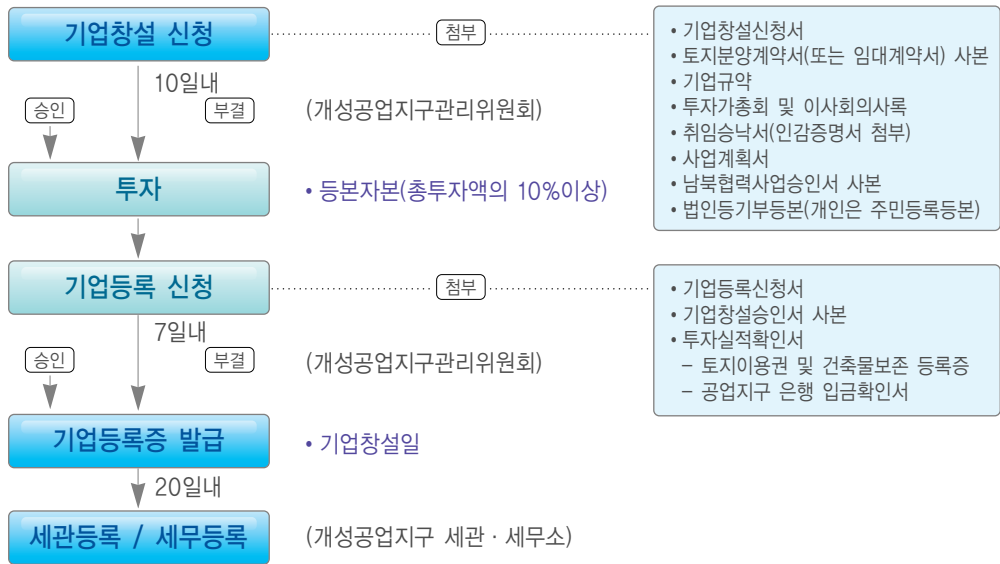


4장 기업창설 · 등록

개성공업지구내에서 기업설립은 기업창설이라고 합니다.

기업 창설

- ◆ **신청자** : 남측, 해외동포, 북측외의 법인, 개인 등 투자가 단독 또는 공동
- ◆ **승인권자**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이사장
- ◆ **기업창성 · 등록절차**



- ◆ **지사또는 영업점 설치**
- 지사 · 영업점 설립신청 · 영업등록신청 및 신청에 대한 승인은 '기업창설 및 등록' 절차에 준함

세 무 등 록

- 근거규정 :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0일내 세무등록(세금규정 제4조)
- 절 차 : 기업은 공업지구 세무서에 세무등록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세무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업규약, 투자검증보고서

세 관 등 록

- 근거규정 : 기업등록을 한 다음 20일내 세관등록(공업지구법 제36조)
- 절 차 : 기업은 공업지구 세관에 세관등록신청서 제출
- * 세관등록의 구체적 절차, 각종 서식은 북측과 협의중

Q&A 4-1 기업창설과 기업등록은 어떻게 다른가요?

- 기업창설이란 납측,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행위를 말하며,
- 기업등록이란 기업창설을 승인받은 기업이 등록자본(총투자액의 10% 이상)을 투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등록자본 : 납측의 자본금 개념으로 발행주식의 액면가치를 의미합니다.

Q&A 4-2 국내에 모기업이 없는 기업도 기업창설이 가능한지요?

- 개성공업지구법에 의하면 공업지구에는 납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경제조직들이 투자할 수 있다(제3조)라고 명시되어 있어 제도상으로는 가능합니다.
- 다만, 현실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규에 의한 사업승인, 개성공단 토지분양, 남북간 인원의 왕래, 물품의 반입·반출절차 등으로 인해 납측에 설립된 법인이 있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Q&A 4-3 기업해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 기업해산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 이사회가 해산결정 후 해산신고서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업책임자, 채권자대표와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법률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내지 9명으로 청산위원회가 구성되며, 청산위원회는 청산작업이 끝났을 경우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업 등록증과 함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기업등록, 세관등록, 세무등록 등의 취소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관리위 청산 후의 재산총액이 등록자본 초과시 초과분의 5%를 기업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15년 이상 운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한 기업소득세가 면제됩니다.



5장 공장 건축

공장건축은 각 기업별로 공단내 건축사예, 복측과의 협조측면, 설계 및 건축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설업체를 선정후 건축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건축 인허가 절차



◆ 건축기준

- 본단지 1차 분양토지(169천㎡)에 대하여는 현재의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기준 적용
-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180% 이하, 높이 26m 이하
- 단 APT형 공장은 건폐율 60%, 용적율 250% 이하, 높이 40m 이하
- 건축선 : 도로경계선에서 5m, 인접대지경계선에서 3m(단, 완충녹지에 인접한 대지경계선은 2m 이하)
- 조경 : 연면적 2,000㎡ 이상은 대지면적의 15% 이상, 2,000㎡ 미만은 대지면적의 10% 이상
- 차량 및 자전거 주차장 설치 : 차량은 바닥면적 600㎡ 당 1대, 자전거는 50㎡ 당 1대

TIP 총투자액 중 공장건축비 비중 (단위 : 억원)

	토지	건물	기계	합계
총투자액 (투자비중)	73 (3.9%)	1,025 (54.3%)	791 (41.8%)	1,88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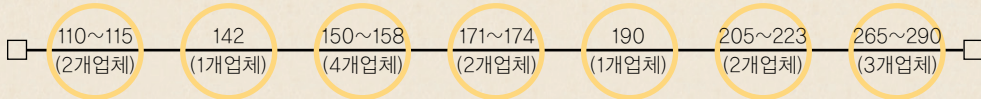
* 총투자액은 입주기업 중 36개사의 총투자액

Q&A 5-1 국내와 비교하여 개성공단내 공장건축 기간 및 비용은 어느 수준인가요?

- 시범단지의 경우 개발초기의 어려움으로 공사비가 국내보다 20~30% 정도 높았으나 현재 공장 건축 공사비는 남측과 유사합니다. 개성공단에서 공사진행시 북측인력 활용이 가능하므로 인건비는 조금 절감이 되지만, 자재의 대부분을 남측에서 반입하여야 하므로 운송비가 증가하고, 또한 남측인력의 숙식비 등이 발생하므로 전체 공사비는 남측보다 약간 많이 듭니다.
- 공기는 출입절차와 자재의 대부분을 남측에서 반입하여야 하므로 남한보다 약 20%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단지 입주기업의 실제 건축비용은 평당 110만원~290만원 소요

《 시범단지 입주기업 건축비용 분포도(단위 : 만원) 》



Q&A 5-2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이 공장 설계시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 인가요?

- 북측근로자를 위한 샤워장, 탈의실, 식당 등의 부대시설, 남측주재원용 숙소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특히 북측의 수도공급 및 주거사정을 감안해 근로자가 공장내에서 교대로 샤워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규모의 샤워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탱크는 충분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남측보다는 큰 규모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생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분리 및 보관이 가능하도록 폐기물 수거장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개성공단 개발 과정>



시범단지 토공사 현장(2004.3)



시범단지 입주업체 공장 건축이 진행중인 모습(2005.3)



대부분의 입주업체 공장 건축이 완료된 시범단지 전경(2006.3)



개성공단 1단계 330만㎡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된 모습(2007.10)

3편 출입절차 및 판로확보

- |1장| 인원 및 자동차 출입
- |2장| 물품 반출·반입절차
- |3장| 전략물자 관리제도
- |4장| 원산지 표시제도



〈박연폭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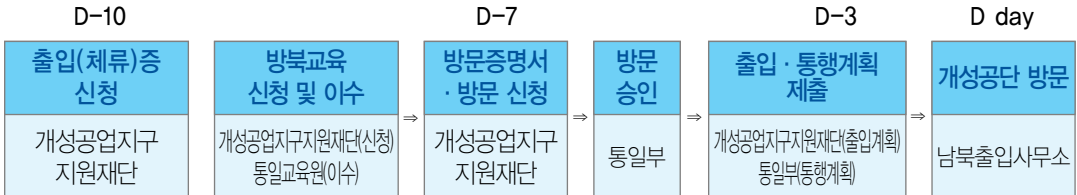
박연폭포는 송도삼절의 하나로 금강산 구룡폭포, 설악산 대승폭포와 함께 조선 3대폭포로 손꼽힌다. 박연폭포는 높이 37m, 너비 1.5m로 천마산과 성거산 사이의 험준한 골짜기로 흘러 내리며, 깎아지른 듯한 벼랑과 사방으로 병풍처럼 둘러선 층암절벽에 안기어 절경을 이룬다. 폭포 위쪽은 바가지 모양으로 패인 박연이라는 연못이 있고, 밑으로는 둘레 120m의 고모담이 있다.



1장 인원 및 자동차 출입

개성공단 방문을 위해서는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및 자동차운행 승인 등 사전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원 출입절차



사업을 위해 개성공단을 출입하려면 상기의 절차를 거쳐야 함. 방북교육 및 출입증 신청은 동시 진행이 가능하며, 자동차로 가시는 분은 방문증명서 신청 후 출입계획 제출 전에 자동차 운행 승인 신청을 해야 함.

◆ 출입증 신청(체류 · 거주등록증) 및 발급

사업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북측에서 발급한 출입증이 필요

- 신청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온라인출입신청시스템(oks.kidmac.com) / 출입예정일 10일전

구 분	출입증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
발급대상	7일 이내 체류자	90일 이내 체류자	1년 이내 체류자	1년 이상 체류자
수수료	2,000원	US\$35	US\$100	US\$200

* 투자자, 단순방문자, 행사인원은 북측의 초청장을 받아야 방문가능(1개월전 초청장 신청)

◆ 방북교육 신청 및 이수

개성공업지구 최초방문시 사전 통일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신청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온라인출입신청시스템(oks.kidmac.com) / 교육전주 목요일 12:00까지
- 교육관련 문의기관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도라산출장소 ☎031-950-5178
- 교육장소 : 통일부 통일교육원 매주 목요일 14시~17시(서울 강북구 수유동 ☎02-901-7052)

◆ 방문증명서 신청 및 발급

북으로부터 출입증 또는 체류증을 발급 받은 후 통일부에서 발급하는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 방북 7일전까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접수된 방문증명서 및 방문신청은 지원재단이 통일부 통통시스템(www.tongtong.go.kr)에 신청
- 방문증명서 수령 장소 :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서울) 또는 도라산출장소
 - * 기존 출입(체류)증 기간만료 후 재발급시 통일부에 방문기간 연장 승인 신청(3일 소요)
- 문의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지원부(☎02-2095-5332)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지원총괄팀(☎02-3783-7421)

출입계획 제출

출입계획은 군사분계선 동행계획(통일부 통통시스템 이용)과 개성공업지구 북측기관 제출용 출입계획(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온라인출입신청시스템 이용) 두가지를 제출

- 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온라인출입신청시스템을 이용, 출입계획 등록·제출(출입예정일 3일전 오전 12시까지)
- ② 온라인출입신청시스템에서 작성하신 출입계획을 다운로드, 통일부 통통시스템에 등록(출입 예정일 3일전 14시까지)
 - * 향후 온라인출입신청시스템과 통통시스템의 연계에 의해 출입계획 제출 일원화 추진 예정
 - 문의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도라산출장소(☎031-950-5178)
 - 통일부 경의선운영과(☎031-950-5061~6)

자동차 출입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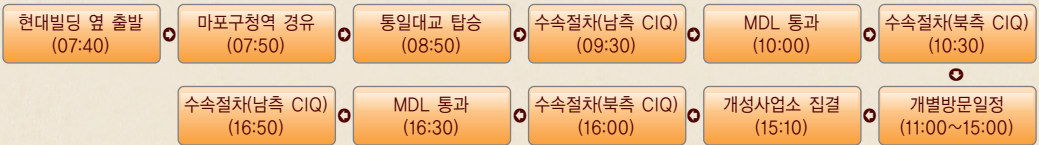
- ▷ 자동차 운행승인서 발급기관 : 통일부 교역지원과 ☎ (02) 2100-5828
- ▷ 통행차량등록증명서 : 수송장비운행승인서 입력시 자동으로 신청 처리
 - 신청·발급기관 : 관세청(서울세관) ☎ (02) 3438-1124
 - * 개성공단 출입시 남북출입사무소 내 세관에 통행차량등록증명서를 제출하고 차량출입신고를 위하여 차량 출발·도착 보고서를 제출, 출입경 심사인을 받아야 함
- ▷ 자동차 전자운행증 : 자동차 운행 승인 신청시 자동으로 발급(8.18 이후 신규 신청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 기존 운행 승인 차량은 빠른 시일내에 추가 공지를 통해 접수·발급 예정)
 - 발급기관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운영지원팀 ☎ (02) 3783-7438
 - 차량운행증을 차에 부착하면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내 차량 심사대의 RFID리더기가 이를 자동 인식하므로, 통행차량증명서 제출과 출입경 심사 날인 생략

Q&A 1-1 외국인도 개성공단 방문이 가능한가요?

- 외국인은 방북승인 및 방북증명서 없이 북측의 초청장과 본인의 여권만으로 개성공단 방문이 가능합니다.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초청장 신청·발급 후, 방북 3일전까지 출입계획서, 개성공업지구 출입인원 및 차량 현황을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Q&A 1-2 개성공단에 정기 셔틀버스가 운행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나요?

- 운행 : 1일 왕복 1회, 주 6일(월~토요일)
- 탑승장소 및 시간
 - 출발 : 계동 현대빌딩 옆(비원주차장)에서 07:40
 - 도착 : 계동 현대빌딩 건너편 18:10



* 버스이용시 버스요금(16,000원)과 출입관련 수수료(12,000원)를 지불

- 현대아산(주)의 출입계획 통보전까지 이용 신청(문의처 : 현대아산(주) 출입팀 02-3669-3963)

Q&A 1-3 방북교육은 통일교육원에서만 받아야 하나요?

- 개성공단 입주기업 준공식 등 행사관련 방북시에는 개성공단 운행차량 내에서 방북교육용 DVD 동영상 시청으로 간이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 또한 원거리, 대규모 인원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출장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일용직 근로자, 업무협약차 방문하는 바이어 등은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영상방북교육(문의전화 : 경의선 운영과 민원실 031-950-5070)으로 대체 가능합니다.(방문당일 8:50~9:30)

Q&A 1-4 개성공단에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북측기관에 신청절차가 필요한가요?

- 개성공단을 빈번하게(5회 이상) 출입하는 차량인 경우, 북측 세관에 운수수단등록증을 신청 (등록비 : 10\$, 대행기관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차창 좌측 하단에 부착 후 운행합니다.



2장 물품 반출·반입 절차

개성에 오가는 물품은 승인 대상품목 이외에는 통관절차만으로 반출·반입이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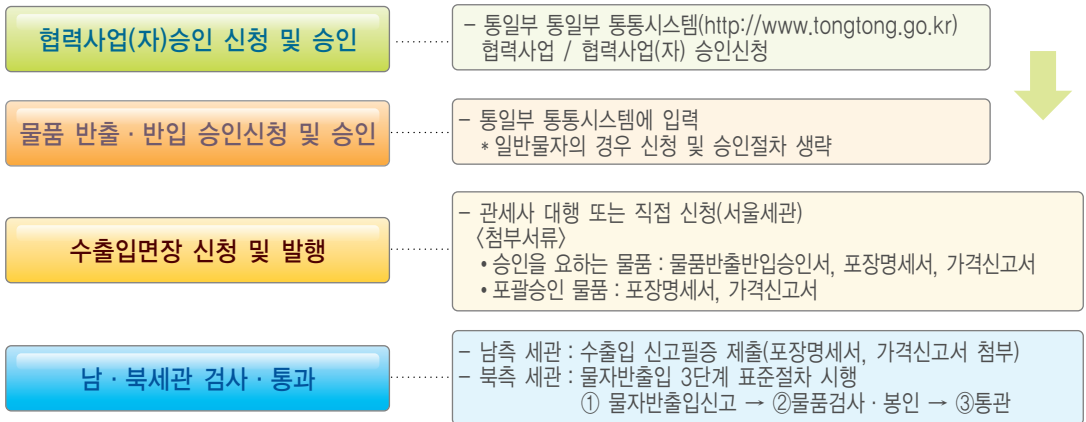
물자 반출·반입 승인

- ◆ 승인을 필요로 하는 물품 : 컴퓨터, 전략물자 해당품목, 반입도서·미술품 등
-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절차에 관한 고시」에 규정
- ◆ 신청 방법 : 통일부 통통시스템 (<http://www.tongtong.go.kr>)에 승인 신청
- 승인담당기관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투자지원팀 ☎ (02) 3783-7443

물자 반출·반입 절차

◆ 승인을 요하는 물품

◆ 포괄승인 물품



◆ 남측 통관

남 → 북	서류작성, 송부 - 포장명세서, 가격신고서	⇒	반출신고	⇒	반출수리 - 반출신고필증 교부	⇒	적하목록전송, 반출 - 반출신고필증 제출
	입주기업		관세사 / 입주기업		관세청(서울세관)		입주기업
북 → 남	서류작성, 송부 - 포장명세서, 가격신고서	⇒	반입신고 - 적하목록 전송	⇒	반입수리 - 반입신고필증 교부	⇒	반입 - 반입신고필증 제출

◆ 북측 통관

개성공업지구내 물자의 반출·반입은 신고제를 원칙으로 함

D-1일	물자반출입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출시 : 개성공업지구세관에 제출(관리위원회 경유) * 1일전 15:00까지 관리위원회 출입사업부 제출 - 반입시 : 반입당일 북측세관에 반입신고서 제출, 주요물자로 관리위에 신고
D day	물품 검사 및 봉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출시 : 세관검사는 물자의 출발지점에서 출장검사 및 봉인(개성공업지구세관) * 검사시간 ① 10:30~12:00 ② 14:30~15:30 - 반입시 : 북측 CIQ현장 검사 및 도착지 검사 실시
D day	물품 운송 및 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출시 컨테이너(유개차)로 북CIQ로 이동, 세관에서 봉인상태 확인후 통관

물품 반출·반입 절차 관련 문의 : 개성공단사업지원단(반출·반입 승인) ☎ (02) 3783-7443
 서울세관 (통관및관세) ☎ (02) 3438-1142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서울) ☎ (02) 2095-5331~4

TIP 북한의 명절과 휴식일

날짜	휴일명	날짜	휴일명
1/1~2	양력설	7/27	전승기념일
1/1~3(음력)	음력설	8/15	해방기념일
2/16~17	국방위원장 생일	9/9~10	정부수립일
2/21	대보름	9/14	추 석
4/15~16	태양절	10/10	당창건일
4/25	인민군창건일	12/27	헌법절
5/1	노동절		

※ 북한의 명절과 휴일에는 출입이 없음

Q&A 2-1 반출입 금지 및 제한 품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개성공단단을 방문할 때에는 남한 신문, 잡지, GPS, 휴대폰, 소형라디오, 녹음기 등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물품은 반출입에 제한(금지)을 받습니다.
- 남북한 반출입 금지 품목
 - 남측 :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통일부 고시 제99-1호)에 따라 반출입 금지 및 제한 품목 규정
 - 북측 :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3호)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내 반출입 금지 품목 지정

남측 반출입 금지 및 제한 품목
<p>● 반입 금지 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간행물·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 총포·도검 및 화약류 등 • 기타 출입심사공무원이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한 규제 물품 및 이를 성분으로 한 의약품 • 호표, 응당, 사향, 해구신 등 <p>● 반출 금지 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상 기밀 및 남한 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 문화재관리법에 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p>● 반출·반입 제한물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반입이 제한되는 물품 • 식품류(식품위생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물품) • 검역대상 물품 • 전락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에 의한 수출 규제 품목 •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북측 반출입 금지 및 제한 품목
<p>● 반입 금지 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 총탄, 폭발물(공업지구 공사용은 제외), 군수용품, 흉기 • 쌍안경·망원경(배율 10배이상), 사진기(160mm이상의 고정 렌즈) • 무전기와 그 부속품 • 독약, 극약, 마약 및 방사성 물질, 유독성 화학물질 • 사회질서와 민족의 미풍양속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출판인쇄물 또는 그 원고, 필름, 사진, 녹음녹화테이프, 소리판, CD, 미술작품, 수공예품, 조각품 •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들어오는 정해진 물품 • 반입금지 합의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북측은 핸드폰, 차량GPS장비, 무선기기, 저장장치, 캠코더 등 금지 <p>● 반출 금지 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 총탄, 폭발물, 군수용품, 흉기 • 무전기와 그 부속품 • 독약, 극약, 마약 및 방사성 물질, 유독성 화학물질 • 역사유물 • 기밀에 속하는 문건, 출판인쇄물(사본한 것 포함)과 그 원고, 필름, 사진, 녹음녹화테이프, 소리판, CD • 반출금지 합의 물품

Q&A 2-2 개성공단내에서 생산활동 등에 필요한 컴퓨터의 반출이 가능한가요?

- 개성공단내에서도 컴퓨터(노트북 포함)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컴퓨터를 개성공업지구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통일부로부터 반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방법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반출 신청 승인 ⇒ 통일부 승인 ⇒ 수출입신고 ⇒ 반출
 - 신청시 컴퓨터 제조번호 입력(조립PC의 경우, 자체관리번호 부여후 신청)
-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승인 유효기간내에 자유롭게 반출·반입 할 수 있으며, 노트북의 경우에는 수출입신고 없이 출입사무소에서 승인서를 보여주면 됩니다.
- 컴퓨터 반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투자지원팀(☎02-3783-7443)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3장 전략물자관리제도

전략물자와 수출통제품목은 개성공단 반출에 제한이 있으므로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략물자

◆ 대량살상무기(WMD)의 제조·개발 등에 전용 가능한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며, 개성공단 반출을 위해서는 심사·판정 및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전략물자의 정의 :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기술을 말함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핵무기
NSG (핵공급그룹)	AG (호주그룹)	MTCR (미사일기술통제 체제)	Wassenaar (바세나르체제)

◆ 전략물자 판정방법

-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략물자 관리시스템' (www.yestrade.go.kr)에 접속하여 자가판정
- 처리절차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판정/허가지원 → 판정지원 → 자가판정지원 선택
- * 자가판정의 방법으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여부를 직접 의뢰하여 판정받아야 함(전략물자 관리시스템 접속 후 사전판정지원 참조 / ☎ 전략물자관리원 02-6000-6441~3)

◆ 전략물자 반출 승인 절차

- 전략물자로 판정을 받은 물품을 개성공단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통통시스템을 이용하여 승인 신청

미국 수출통제품목

◆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미국산 물품·기술 또는 소프트웨어가 25% 이상 포함된 제품을 개성공단에 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사전 승인절차가 필요

전략물자 및 미국 EAR관련 사항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투자지원팀(☎02-3783-7442)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A 3-1 전략물자로 판정되면 반출이 불허되는지요?

- 전략물자라고 하여 반출이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북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통일부고시 제2007-8호) 제8조는 전략물자의 반출승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①반출품의 기술수준과 군사적·외교적 민감성 ②민간부문에서의 사용 여부 ③최종사용자와 최종사용 용도에 대한 신뢰성 ④제3국으로 재수출될 가능성 ⑤반출자, 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전략물자 거래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전략물자가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출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개성공단내 투자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통일부와 전략물자관리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략물자 사전판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수수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Q&A 3-2 미국수출관리규정(EAR)에 해당하는 품목을 개성공단으로 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 미 상무부에 우편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재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관련 사항은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 홈페이지(www.bis.doc.gov)를 참조
- ▶ 한편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은 <http://snap.bis.doc.gov/>을 참조
 - * SNAP(Simplified Network Application Process) :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수출허가 신청시스템
- ▶ 미국 EAR을 위반하였을 경우 미국정부로부터 미국과의 거래 및 미국산 품목의 거래가 금지되어 해당기업이 해외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또한 국가신용과 개성공단 사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미 EAR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4장 원산지표시제도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제관세상 원산지가 '북한산(産)'으로 판정되어 일부 국가로부터는 관세상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개성공업지구 생산제품의 원산지 표시

◆ 내수의 경우

- (1) 기업의 등록자본 중 남한의 소유지분이 60% 이상
 - (2) 전체 직접재료비 중 남한산 비율이 60% 이상 등
- 상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ong), 한국산 등으로 표시 가능

◆ 수출의 경우

- 수입당사국의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며, 일반적인 판정기준에 의하면 개성공업지구 생산제품은 대부분 원산지가 Made in DPRK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음
- *원산지 판정은 실질적 변형(세번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을 기준으로 판정

원산지 및 판로 확보 문제

◆ 주요국의 원산지 적용

- 미국 : 북한산 제품에 대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관세율 적용
- 일본 · EU : 북한산 품목에 따라서 다소 불리한 관세 혹은 쿼터제를 적용

◆ 정부의 다각적 노력

- 한 ·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 남측으로 반입되어 싱가포르로 수출되는 개성공업지구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 부여
- 한 · EFTA, 한 · ASEAN 자유무역협정 체결 : 역외가공방식을 활용한 개성공단 생산제품(국내 원부자재 사용률 60% 이상)에 대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 부여
- 한 · 미 FTA, 역외가공지역 인정 협의 예정 : 개성공업지구 역외가공지역 지정 추진 계획
- 한 · EU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특혜관세 인정 협의중

*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생산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개성공업지구 생산제품의 특혜관세 부여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사항은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투자지원팀(☎ 02-3783-7442)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A 4-1 주요 국가들의 개성제품에 대한 관세는 어떠한지요?

▶ 미국의 경우

- 북한에 대해 정상교역관계(normal trade relation : NTR) 대우를 부여하지 않고, 초고세율의 column2 관세율을 적용

* column2 관세율 해당국가는 적성국이나 WTO 미가입국으로 미국시장 진출이 거의 불가능한 초고관세율 (최소 2배에서 10배 이상의 높은 수준)

▶ 일본·EU는 북한에 대해 교역상 특별한 규제조치는 없으나

- 일본의 경우 북한상품에 개도국에게 적용되는 특혜관세율이나 WTO회원국에게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이 아닌 국정관세율을 적용

- EU시장의 경우 일반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중국·베트남 등 다른 개도국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나 북한산 제품에 대해 협정관세율을 적용 ⇒ 미국이나 일본보다 유리한 상황

* 따라서 개별 기업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 내수용 판매, 또는 개성공단 수출품에 대한 관세상 불이익이 없는 지역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Q&A 4-2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었는데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특혜관세 인정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요?

▶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한 이후부터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는 협정 발효 1년 후에 개최되며, 그 이후는 연 1회 또는 상호 합의 때에 수시로 개최

Q&A

4-3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한국산과 같은 특혜관세를 부여받은 사례가 있는지요?

한국이 체결한 4개의 FTA 중 한-칠레를 제외한 3개의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인정받았습니다.

- ① 한-싱FTA('06. 3. 2. 발효) : 부속서(4B)에서 개성공단 생산 제품이 한국 영토를 거쳐 싱가포르에 수출되는 HS 6단위 4,625개 품목을 한국산으로 인정

- ② 한-EFTA('06. 9. 1. 발효) : 역외가공(OP)방식, HS 6단위 267개 품목
* E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③ 한-ASEAN('07. 6. 1. 발효) : 역외가공(OP)방식, HS 6단위 100개 품목
* ASEAN :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 단, 한-ASEAN FTA에서 타이는 자국 사정으로 당시 FTA에서 제외되었고, 최근 한-ASEAN FTA에 가입하기 위한 협상이 한-태 양자간 진행중

4편 현지기업활동

|1장| 세금 및 보험제도

|2장| 외환·금융·회계제도

|3장| 노무·안전·환경관리

|4장| 부동산제도



〈공민왕릉〉

고려 31대왕인 공민왕의 무덤으로 개성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14km 떨어져 위치해 있다. 이 무덤은 쌍분으로 왼편이 공민왕의 현릉이고 오른편은 왕비인 노국공주의 정릉으로 풍수지리상 명당에 위치한 고려시대 대표적 능묘이다.



1장 세금 및 보험제도

세금

◆ 이중과세방지

- 입주기업 발생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종류에 따라 남북한 중 일방에서만 과세됩니다
- 근거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2003.8.20 발효

◆ 세금 및 감면제도

구분	납세의무자	과세기준	세율	감면제도
기업소득세	개성공단에서 소득을 얻은 기업	결산이윤	14% 일반업종 10% (경공업, 하부구조, 첨단과학 등 장려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려, 생산부문 투자 : 15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은 이윤발생연도부터 5년 면제, 이후 3년은 50% 감면 · 서비스부문 투자 : 10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은 이윤발생연도부터 2년 면제, 이후 1년 50% 감면 · 이윤재투자 : 3년 이상 운영시 재투자 통해 해당한 기업 소득세의 70%를 다음연도 세금에서 감면
개인소득세	개성공단에서 소득을 얻은 개인	월 보수액에서 30%를 공제한 금액이 500US\$ 이상일 경우 등	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당국 협정에 의한 소득 면제 · 북측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저축성 예금 이자와 보험금 또는 소득 면제 ·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비거주자들 예금의 이자소득 면제
재산세	매년 1월 1일 현재 공단내 영구 건물 소유자	건물용도별 취득시 현지가격	0.1~1%	· 신규 건물소유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
상속세	공단내 재산을 상속받은 자	세금규정에서 정한 지출을 공제한 금액의 실속 재산액	6~25%	-
거래세	생산부문의 기업	생산물 종류별 판매 수익금	1~15%	· 생산제품을 남측 혹은 다른나라에 수출할 경우 면제
영업세	서비스부문의 기업	건설, 금융 등 부문별 서비스 수익금과 건설물 인도 수익금	1~7%	· 하부구조 부문 기업 면제 : 전기, 가스, 용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지방세	도시경영세	월 노임총액 또는 월 수입총액	0.5%	-
	자동차이용세	익년 1월 1일 현재 공단내 자동차를 소유한 기업 또는 개인	자동차 종류	3~60US\$

◆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에 따라 개인 및 기업은 북측 지도총국이 지정한 공업지구 보험 회사에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담당기관

- 공업지구보험회사 : 조선민족보험총회사(KNIC)
 - *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2005. 1. 26 공업지구보험회사로 KNIC 선정
- 보험사업원칙 : 공업지구보험회사에 보험 가입(보험 규정 제5조)

◆ 적용 대상

- 개성공업지구 창설기업, 지사, 영업소, 사무소 및 개성공업지구 체류·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 동포, 외국인

◆ 의무보험 대상(보험규정 제6조)

- 화재보험 : 화재, 폭발, 자연재해로 건물 및 기계장치에 생긴 물질적 손해
- 가스배상책임보험 : 가스사고로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생긴 손해
- 자동차배상책임보험 :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 부상당하게 하거나 제3자의 재산에 입힌 손해
- 종업원재해보험 : 종업원이 노동과정에 재해로 입은 손해(북측 종업원 제외)

◆ 분쟁해결방법

- 분쟁 발생시 보험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해결을 하고, 협의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중재, 재판 절차 또는 남북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해결절차로 해결 가능

TIP • 남측에서 채용되어 북측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 또는 사업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남측의 일반근로자가 남측에서는 기본급여를, 북측 기업으로부터는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세금 납부 여부(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146,2005.10.19)

- 원칙적으로 남측근로자가 받는 모든 급여와 수당에 대하여 북측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이하 "남북 조세합의서"로 함) 제15조 제1항]
- 다만, 남북 조세합의서 제15조 제2항의 단기체재자의 각 요건을 갖춘 남측근로자가 받는 인적용역소득(남북 조세합의서 제15조 제2항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에 해당하는 보수에 대한 세금은 남측에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 남측에서 채용되어 북측 개성공단에 파견된 남측 근로자가 남북 조세합의서의 규정에 따라 북측에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 남북 조세합의서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측에서는 당해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면제)됩니다.

Q&A

1-1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남측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개성공단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OEM방식)하여 제작한 제품을 판매하는 남측기업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5~30% 감면
 - 2008 사업연도부터 국내에서 제조한 것과 동일하게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

- 국내 모기업이 개성공단의 사업용 자산(중고품 제외)에 투자했을 경우, 이를 국내 투자로 보아 그 투자금액의 일정률(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 모기업이 국내에서 납부하게 되는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
 - * 국내 모회사가 투자한 자산을 개성 자회사에 설치·임대한 후, 동 자산의 유지관리비용을 모회사가 부담하고, 동 자산을 모회사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토록 하며, 생산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에 적용

Q&A

1-2 국내와 비교할 때 개성공단 세율수준은 어떠한가요? (중국과도 비교해 주세요)

구 분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영업세
개 성	10~14%	4~20%	0.1~1%	1~7%(남한의 부가가치세와 유사)
남 한	13~25%	9~36%	0.3~7%	부가가치세(10%)
중 국	15%	5~45%		3~50%

Q&A

1-3 개성공단에 대한 이중과세방지란 어떤 제도인가요?

- ▶ 남한 또는 북한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 국내 모기업이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에 따라 북측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만큼 국내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는 방식으로 처리
 - 반면, 현지법인이 국내에 일정 형태의 거점을 두고 구매·판매 등 관련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외환금융, 회계, 세금 관련 법규가 적용될 수 있음
- ▶ 이 경우 현지법인과 국내거점(모기업 포함)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는 모두 개별기업간 거래에 해당되어 회계 처리되며, 현지법인과 국내거점간의 물품교역에 따른 경상거래대금은 현지은행과 국내 은행간 결제방식(계정이체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 ▶ 현지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북측 과세기관에, 국내 거점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남측 과세기관에 각각 납부하면 됩니다.
 - 국내 거주자가 개성공단에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따라 북측에 소득세를 납부



2장 외환 · 금융 · 회계제도

외환 및 금융제도

개인 및 기업은 제한 없이 외화를 보유하거나 은행에 예금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공업지구 이외 지역으로의 입출금이 가능

◆ 외환관리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 관리위원회에 계좌개설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내 은행이나 외국 은행에도 개성공단 현지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매 반기 계좌별로 외화수입 지출문건을 작성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

◆ 외화의 범위

- 전환성 외화 현금, 전환성 외화로 표시된 채권,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 수표 등 지불수단, 장식품 아닌 귀금속 등

◆ 배당 등 해외송금

- 귀금속 이외의 외화는 세관에 별도 신고 절차 없이 반출입이 가능하며,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의 송금은 비과세

회계제도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 따라 회계화폐는 US\$로 하며, 개성 현지법인은 국내 모기업과 독립된 회계단위로 처리됨. 또한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에 따라 회계검증사무소의 회계검증을 받아야 함.

◆ 회계연도 : 1월 1일 ~ 12월 31일

◆ 회계결산서

-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처분계산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 현금유동표)
- 결산서주해
- 재정상태 설명서

◆ 대차대조표의 구성

- 재산, 채무, 자본으로 구분
- 재산과 채무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재산과 고정재산, 유동채무와 고정채무로 구분
-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으로 구분

◆ 손익계산서의 구성

- 판매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기업소득세 차감전 손익과 당기 순손익으로 구분
- 수입과 비용을 발생기간별로 나누어 처리

◆ 결산서 제출

- 기업은 회계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고,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공업지구세무소에 제출

Q&A

2-1 국내 모기업이 정책자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개성현지 법인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모기업 회계에서
분리하여, 현지법인 부채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 ▶ 남북협력기금법은 기금대출대상을 “남한주민”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대출금을 현지법인 부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개성공업지구지원법('07.6.25 공포) 제11조는 남북협력기금을 개성현지법인에도 지원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금대출금 차주변경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 신용보증기관이 개성현지법인에 대해 직접 보증지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신보법 또는 기신보법은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보증지원대상이 “남한의 중소기업”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성현지법인에 대해 직접 보증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률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Q&A

2-2 개성공단 현지법인 명의로 국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요?

- ▶ 개성공업지구법 등 복측 법규상으로는 국내계좌 개설에 제약이 없으며, 국내 법규상 개성 현지법인이 복측법인임을 감안, 국내 거주자와 구분하여 비거주자 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별도 사업자 등록 없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앞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와 서류(기업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계좌 개설이 가능
 - ※ 비거주자 계정의 특징
 - 대외송금이 자유롭고, 국내 경상거래대금 취득 및 지급이 가능
 - 국내 원화를 외화로 전환하여 입금하거나 외화의 국내처분 및 투자에 제한

Q&A

2-3 회계검증의 목적 및 관련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회계검증의 목적은 독립적인 검증원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회계검증의 주요내용

- 검증대상 : 모든 등록기업과 일정요건 충족하는 지사, 영업소, 개인업자
- 공업지구에는 2개의 회계검증사무소(남한의 회계법인)를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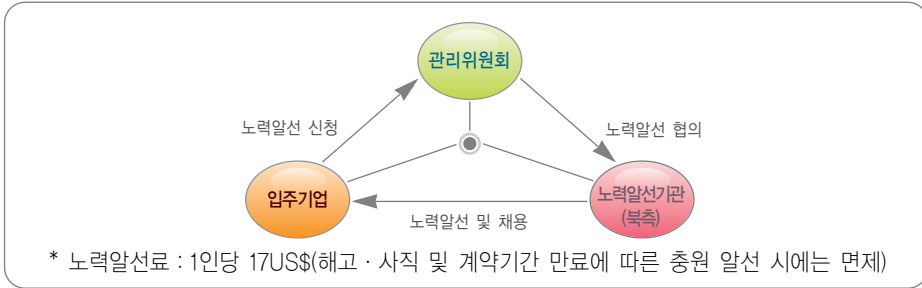
▶ 회계검증사무소의 업무

- 투자검증
 - 새로 창설되거나 통합, 분리되는 기업, 총투자액의 10% 이상을 재투자하는 기업
 - 중고설비를 투자하는 기업
- 결산검증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 기업의 회계결산서에 대하여 검증
- 청산검증
 - 해산 또는 파산되는 기업의 청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
- 장부정리 대행



3장 노무 · 안전 · 환경관리

노무관리



◆ 인력채용 및 해고

- 채용 : 입주기업과 노력알선기관 간 노력알선계약을 체결하여 인력을 공급 받으며, 입주기업은 복측이 알선한 인력에 대해 기능시험, 면접 등을 통해 채용 여부를 결정
⇒ 직무별 필요인원을 문서로 작성하여 관리위원회를 경유, 복측 노력알선기관에 신청
- 해고 : 해고시에는 당사자에게 30일 전까지 사유를 통보하고 해고종업원 명단 및 해고사유를 노력알선기업에 제출(개정공업지구 노동규정에 해고 조건, 해고할 수 없는 조건 등 규정)

◆ 근로조건

- 노동시간 : 주 6일제 48시간
- 노동보수 : 노임, 가급금, 장려금, 상금으로 구성

노 임	가 급 금	장려금 · 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최저노임 : 55.125US\$ • 최저임금 상승률 : 연 5% 이하 • 기본노임 : 월 최저노임 이상 기업이 결정 * 견습기간(3개월) : 기본노임의 70% 적용 • 지급방식 : 종업원에게 직접지급이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야간근무 : 해당 근무시간의 노임에 50% 가산 • 휴일/주 48시간 초과 야간근무 : 해당 근무시간의 노임에 100% 가산 	기업의 필요에 따라 지급

- 보조금 및 사회 보험료
 - 휴 가 비 : 3개월 노임 ÷ 실가동일수 × 휴가일수(출산 휴가는 60일분)
 - 생활보조금 : 일당 또는 시간당 노임의 60%(기업 책임 또는 교육으로 일하지 못한 시간)
 - 퇴직보조금 : 3개월 평균 월노임 × 근무연수(기업사정으로 1년이상 근무자 퇴직시)
 - 사회보험료 : 월 노임 총액의 15%

• 휴 가

정기휴가	보충휴가	출산휴가
年14일	2~7일 (유해업무 종사자)	150일 (유급 60일)

안전 관리

개성공업지구에서 입주업체 및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산업안전, 전기 및 가스안전, 소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실시

◆ 산업안전, 전기 및 가스안전

- 입주업체의 안전과 관련한 기술지도, 점검 및 진단
- 재해발생시 재해조사 및 조사서 작성 보고
- 입주업체에 대한 전기 및 가스안전 대행(국내의 전문기관)
-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교육
- 노동안전담당일꾼, 가스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업무수행여부 지도 점검

◆ 소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

- 관리위원회 내에 시설관리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소방 활동과 인명에 대한 응급구조 등의 활동을 수행

환경 관리

◆ 폐수처리

- 도금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중금속류의 폐수나 염색, 피혁, 제지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난 분해성 물질의 폐수는 자체 공장의 방지시설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의 환경보호계획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오수관로를 통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
- 용수사용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과 발생 오폐수의 처리에 따른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용수사용량과 오폐수발생량에 따라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부과

상·하수시설 및 공통관리비

- 시설의 관리·운영비와 수지균형을 맞추는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부담

상·하수시설

- 0.3US\$ / 톤(용수공급비용) + 0.3US\$ / 톤(하수처리비용)

공통관리비

- 전기요금 등 0.05US\$ / 3.3m²

※ 본 단지(도로·가로등·공연·가로수 등) 인수관리시 요금기준 변경 예정



Q&A 3-1 북측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국내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가요?

- 북측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남측의 70~80% 정도입니다. 동일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중국의 경우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기술교육이 개성공단에서는 기업과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통상의 경우 1~3개월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미 입주한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북측 근로자를 처음 채용하였을 당시에는 남측 근로자에 비해 생산성이 현저하게 낮지만, 2~3개월간 훈련을 지속한 결과 70% 수준까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 아울러 북측 근로자들은 서로 지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 매우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자기가 맡은 과업을 열심히 해서 달성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Q&A 3-2 공급받은 인력이 노력알선계약 조건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또, 북측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이동과 근무상 지시·명령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요?

- 노력알선계약 조건에 맞지 않는 인력은 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채용된 인력이 3개월의 견습기간 중에 기업이 원하는 기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북측에 인력 교체 요청이 가능합니다(상기의 경우는 노력알선료 추가부담 없음).
- 개성공단에서는 국내와 비교하여 현재까지는 근로자 이동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 다만, 이미 입주한 기업들은 필요에 따라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여 부분적으로나마 근로자 배치전환을 하고 있으며
 - 이러한 기업의 인사재량권은 개성공단사업의 활성화에 따라 점차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는 기업이 직장장(작업반장)과 협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A 3-3 북측 근로자들의 출·퇴근과 숙식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 북측 근로자들의 출·퇴근은 관리위원회, 현대아산, 입주기업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부는 금년 10월 중 출·퇴근버스 100대를 추가로 투입하여 근로자 출·퇴근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북측근로자는 점심에 도시락을 지참해 오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점심시간에 간단한 국물과 잔업시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A 3-4 북측근로자들은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나요?

- 근로시간 중 각 기업마다 1~2회 정도의 휴식시간이 있습니다. 휴식시간은 기업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오전 10시나 오후 3시에 15분~20분 정도 실시합니다. 이 시간에는 가볍게 몸을 풀 수 있는 업간체조를 5분 정도 시행한 뒤 휴식을 취합니다.
- 점심시간에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여가 시간에 배구, 족구, 탁구 등의 운동도 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기타를 치거나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Q&A 3-5 근로 환경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회사의 의무는 사항이 있는지요?

- 개성공업지구노동규정상 기업은 고열, 가스, 먼지, 소음을 막고 채광, 조명, 통풍 같은 산업 위생조건을 보장해야 하며, 노동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
- 임신 6개월이 지난 여성종업원에 대해서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 근로자에게 노동보호용구 등 노동보호 물자를 공급해야 하며 노동 안전 기술교육 후 일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황진이의 시조



〈황진이〉
조선 중종대 개성의
기생, 시조시인

산(山)은 옛 산(山)이로되 물은 옛물 아니로다
주야(晝夜)로 흐르니 옛 물이 있을소냐
인걸(人傑)도 물과 같도다 가고 아니 오노매라

동짓(冬至)달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春風)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퍼리라

청산리(靑山裏) 벽계수(碧溪水)야 수이 감을 자랑마라
일도창해(一到滄海)하면 돌아오기 어려오니
명월(明月)이 만공산(滿空山)하니 쉬어 간들 어떠리

청산(靑山)은 내 뜻이오 녹수(綠水)는 님의 정(情)이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變)할손가
녹수(綠水)도 청산(靑山)을 못잊어 우리 예어 가는고



4장 부동산제도

개성공업지구내에서도 부동산의 등록, 취득, 양도, 임대, 저당 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권

- ◆ **취득** : 분양 또는 양도
- ◆ **등록** : 토지이용권 취득 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분양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
- ◆ **토지이용**
 - 분양 또는 양도받은 날로부터 토지임대기간까지 토지이용
 - 토지임대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고 토지이용증 재발급으로 토지이용기간 연장가능
- ◆ **토지사용료(국내 종합토지세와 유사)**
 -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발업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부과
 - 토지사용료 기준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

건 물

- ◆ **취득** : 신축, 기존건물 분양 또는 양도
- ◆ **등록**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건물소유권 등록 신청

부동산의 양도, 임대, 저당

토지이용권 및 건물소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임대, 저당 가능하며, 부동산의 양도, 임대, 저당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등록

* 건물 미건축 시 토지 양도·임대 불가

- ◆ **상속**
 - 부동산 소유자 사망시 부동산 관련 재산상 권리의무는 상속자에게 승계
 - 상속자판정, 상속재산 분배비율은 사망당시 피상속자가 속한 나라 또는 지역의 법에 따름
- ◆ **저당**
 - 저당권 우선순위는 저당등록의 순위에 따름
 - 저당물처분 : 채무상환하지 못하거나 상속자가 없을 경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저당물 경매 신청
 - 저당물 처분액 분배 : 세금, 수수료, 저당물의 처분비용 등 정해진 우선 공제대상금을 납부하고 남은 자금을 임대 또는 저당 등록 순위에 따라 임차자 또는 저당권자에게 분배

Q&A 4-1 토지이용권 및 건물소유권 등록은 언제하는지요?

◆ 토지이용권

- 토지이용권을 취득한 기업은 계약일 또는 계약에서 정한 날부터 14일 안으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제12조).

◆ 건물소유권

-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준공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으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건물소유권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Q&A 4-2 1필지 토지를 2인 이상 소유시, 토지구분등록은 가능한가요?

◆ 건물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토지이용권 이전등록신청시 공유지분 분할을 합의한 「토지이용권 공유지분 분할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유자 지분으로 토지이용권 이전등록을 할 수 있고, 구분등록은 되지 않습니다.

◆ 건물 등록일로부터 2년 이후

- 토지 구분등록은 ①매매의 경우, ②지적 경계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구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지분분할 신청 및 승인후 지분면적을 구분한 「토지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를 첨부하여 토지이용권 분필등록을 하면 됩니다.

Q&A**4-3 부동산 등록, 저당권 등 권리관계 설정·변경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 기업이 개발업자로부터 토지이용권 이전등록, 건축물보존등록 및 토지이용권·건축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최초 1회에 대하여 부동산 등록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1차 등록 후 부동산 매매 등에 따른 부동산 이전 등록(2차 등록)시에는 수수료를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Q&A**4-4 1동의 건물을 2인 이상 소유시, 건물의 구분 등록 및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지요?**

- 각 소유자별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건축물 준공검사 신청시 건축물대장을 구분하여 신청, 준공승인 후 건물소유권보존등록신청서에 구분된 건축물대장 등본을 첨부한 후 건물을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구분 건물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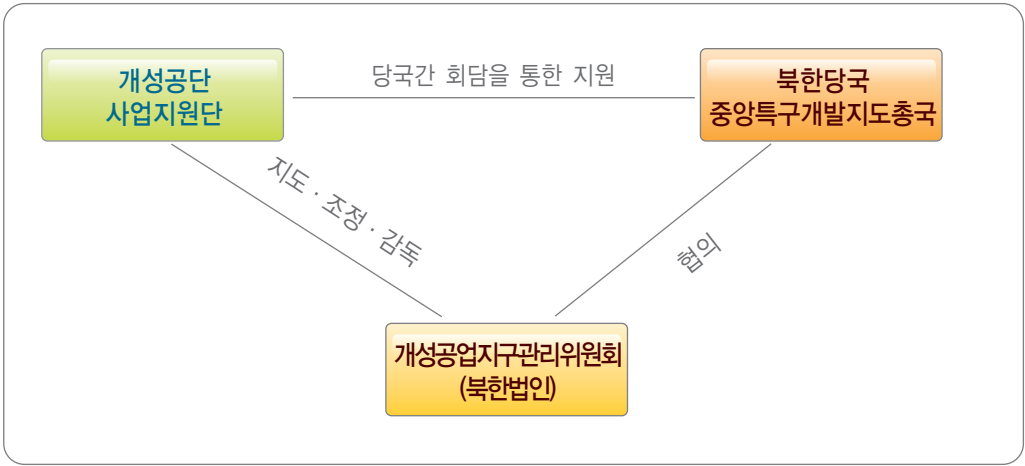
부 록

- | 부록1 | 개성공단 사업체계
- | 부록2 | 개성공단 관련법규
- | 부록3 | 개성공단 관련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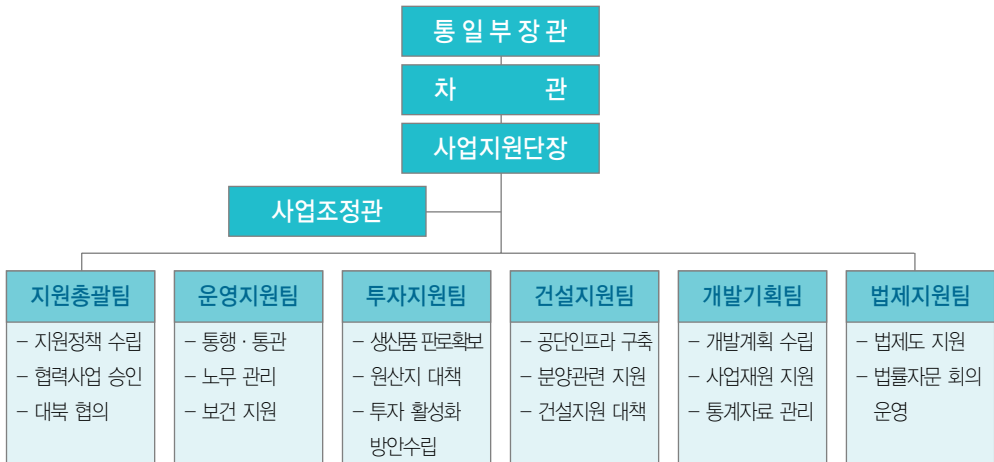
종합지원센터 조감도

[부록] 개성공단 사업체계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개성공단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중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9개 정부부처 인원들로 구성되어 각 분야별로 개성공단 개발사업 승인 및 지원업무를 수행



[부록2] 개성공단 관련법규

구 분	명 칭	구 분	명 칭
《남한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법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사업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준칙 - 개성공업지구 부동산등록준칙 - 개성공업지구 부동산집행준칙 - 개성공업지구 지적준칙 - 개성공업지구 토지계획 및 이용에 관한 준칙 - 개성공업지구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 개성공업지구 건축준칙 - 개성공업지구 건축에 관한 세부지침 - 개성공업지구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세부지침 - 개성공업지구 건축물의 설비에 관한 세부지침 - 개성공업지구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에 관한 세부지침 - 개성공업지구 설계도서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 개성공업지구 가스안전관리준칙 - 개성공업지구 건설안전관리준칙 - 개성공업지구 노동안전준칙 - 개성공업지구 소방준칙 - 개성공업지구 전기안전관리준칙 - 개성공업지구 대기환경관리준칙 - 개성공업지구 소음·진동관리준칙 - 개성공업지구 수질환경관리준칙 - 개성공업지구 식품위생 및 전염병예방준칙 - 개성공업지구 폐기물관리준칙 -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준칙 - 개성공업지구 광고준칙 - 개성공업지구 야외광고물기준 세부지침 - 개성공업지구 자동차등록준칙 - 개성공업지구 자동차등록번호부여와 자동차 등록번호판부착 및 봉인에 관한 세부지침 - 개성공업지구 기업책임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준칙 - 개성공업지구 석유판매업준칙 - 개성공업지구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준칙 - 개성공업지구 주유물자관리준칙 - 개성공업지구 준칙제·개정절차 및 공포에 관한 준칙 - 개성공업지구 통계자료 등에 관한 준칙 - 개성공업지구 신탁준칙 - 개성공업지구 주차장관리준칙 - 개성공업지구 기업회계기준 - 개성공업지구 감정평가기준 -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준칙 -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기준 - 개성공업지구 출입증 발급준칙 - 개성공업지구 건축물분양에 관한 준칙 - 개성공업지구 건설사업자 선정지침
《합의서》 4대경협 합 의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합의서》 개성공업 지구관련 합 의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합의서》 기 타 관 련 합 의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북한법규》 개성공업 지구법및 하위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 -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 운영규정 -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 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규정 -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 -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 - 개성공업지구 광고규정 -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 개성공업지구 자동차관리규정 -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 		

* 해당 법규원문은 통일부(www.unikorea.go.kr) 또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www.kidmac.com)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록3] 개성공단 관련기관

구 분		기관명	전화번호	웹주소
개성공단 지원업무 총괄	업무총괄, 방문승인, 협력사업승인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지원총괄팀	(02)3783-7415	http://www.unikorea.go.kr http://blog.naver.com/ unigaeseong
	통관·통행, 노무·보건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운영지원팀	(02)3783-7438	
	자금대출, 판로지원, 전략물자, 원산지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투자지원팀	(02)3783-7443	
	기반시설건설, 환경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건설지원팀	(02)3783-7454	
	증장기 개발계획수립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개발기획팀	(02)3783-7488	
	법률·제도, 세금·보험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법제지원팀	(02)3783-7460	
출입증, 현지개성공단 관련업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서울지사(지원재단)	(02)2095-5320	http://www.kidmac.com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개성)	001-8585-2020		
분 양	한국토지공사	(031)738-7419	http://www.iklc.co.kr	
차량운행승인	통일부 교역지원과	(02)2100-5828	http://www.unikorea.go.kr	
통관·통행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031)950-5060	http://www.unikorea.go.kr	
	관세청 서울세관	(02)3438-1114	http://seoul.customs.go.kr	
기 금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	(02)2100-5815	http://www.unikorea.go.kr	
	한국수출입은행	(02)3779~6114	http://www.koreaexim.go.kr	
전략물자	전략물자관리원	(02)6000-6400	http://www.yestrade.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415	http://www.kotra.or.kr	
해외판로 및 원산지	한국무역협회	1566-5114	http://www.KITA.NET	
보증지원	기술보증기금	(051)460-2417	http://www.kibo.or.kr	
	신용보증기금	(02)710-4166	http://www.kodit.co.kr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청	(042)481-4485	http://www.smba.go.kr	
	중소기업진흥공단	(02)769-6862	http://www.sbc.or.kr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23	http://www.kbiz.or.kr	

개성공단 Q&A

GaeSeong Industrial Complex Guide

발행일 | 2008년 10월 15일

발행처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발간기획 | 개성공단사업지원단 투자지원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1가 10번지 우리빌딩 16층

전화 | 02)3783-7443 팩스 | 02)3783-7491

디자인 & 인쇄 | 웃고문화사 02)2267-3956

www.unikorea.go.kr 



GaeSeong Industrial Complex Guide
개성공단 Q & A

발행처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Tel (02)3783-7443 Fax (02)3783-7491